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
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
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- 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
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
다. 현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
유족(“수권자”)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, 수권자 사망 시

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

□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,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입니다. 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현행 조례상의 표기 오류를 수정하고(제2조).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배우자를 포함하고,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(제3조제1항제4호).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,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

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☐ 부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, 원안대로 의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- ☐ 감사합니다.